
내부심의위원회

설치 및 운용

실천사항



I. 목 적

이 가이드라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 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-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- 심의위원회 구성은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, 법무부서장, 구매부서장, 해당 사업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단, 하도급법 관련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경우, 계약부서인 구매부서장을 제외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III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

- 내부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안건이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“안건 없음” 이라고 기록 관리한다.
- 내부 심의위원회는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(예상)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, 사후(계약종료 후) 심의하여야 한다.

〈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〉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-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⑤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〈하도급법 관련 계약종료 후 심의사항〉

- ①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여부(하도급법 상 60일 이내)
- ② 하자보수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-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
- ④ 선금금 지급 여부(15일 이내)
- ⑤ 기타 하도급법 위반 여부

-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되었을 경우,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.

〈하도급법 관련 분쟁조정 심의사항〉

- ① 하도급 분쟁신청의 유효성(서면 신청)
 - ②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신속한 보고 여부
 - ③ 하도급 분쟁 신청의 사실 관계(진위) 여부
 - ④ 분쟁 조정안의 협력사 요청 반영여부 (미 반영시, 사유기재)
 - ⑤ 기타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 심의
-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-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-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-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